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5호 2022. 4. 21.(목)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557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사천시 공고 제2022-558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8
- 사천시 공고 제2022-559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4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58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30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557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 삭제(안 제4조의1)
- 나. 인용 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5조 및 제8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 775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2,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 삭제(안 제4조의1)
- 나. 인용 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5조 및 제8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 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한다”를 “운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10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1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5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단, 제8호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제4조제3항제1호 중 “시금고”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한다.

제4조의1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6호”를 “영 제26조의4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1,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금의 조성) <u>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도비 보조금</u> 2. <u>시의 일반회계 출연금</u> 3. <u>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u> 4. <u>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u> 5. <u>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u> 6. <u>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u> 7. <u>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u> 8. <u>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u> <p>제3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다음</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삭 제></u></p> <p>제3조(기금의 용도) <u>자활기금(이</u></p>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
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
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
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하 “기금” 이라 한다)-----
-----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단,
제8호는 제외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
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
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
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
험법」, 「국민연금법」, 또
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 14. (생략)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
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②
(생략)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삭 제>

<삭 제>

2. ~ 6. (현행 제10호부터 제1
4호까지와 같음)

7. ----- 사천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2. ~ 4. (생략)

④ (생략)

제4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 4. (생략)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금고 -----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지원대상)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26조의4제9호-----

6. 법 제18조의6-----

채용기업

7. (생략)

제8조(기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 ⑤ (생략)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생략)

제13조의1(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금의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적용) 이 조

7.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

-----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공고 제2022- 558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2,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용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은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잔여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잔액 및 용자금의 회수 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공고 제2022- 559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2,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잔여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5호

사천시 고시 제 2022 - 84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4. 21.

사 천 시 장

1. 점용 · 사용 승인번호 : 제2022-2호
2. 점용 · 사용 승인 연월일 : 2022년 3월 11일
3. 점용 · 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2020년 어촌뉴딜사업(중촌항) 물양장 확장 및 선착장 설치공사
4. 점용 · 사용의 장소(공사장소)
 -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4번지선 일원
6. 점용 · 사용의 기간 : 2022. 3. 11. ~ 2051. 12. 31.
7. 점용 ·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
8.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2-4호
 - 공사기간 : 2022. 4. 8. ~ 2023. 1. 23.
9.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2. 4. 8.
10.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 · 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